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2. 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진 안 군 수

1. 사업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45백만원(국비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별도]

3. 사업별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기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우선지원)아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 우선지원

- 2025년 6월 30일까지 IoT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지침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_x, NO_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또는 다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중 해당 지자체장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 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 까지 지원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4. 사업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장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신청서 제출
-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견적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사업장 승인

5.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7.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부가세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8. 신청기간 : 2024. 1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 내 도착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진안읍 중앙로 67)
 - ※ 사업담당자 : 진안군 환경과 환경관리팀 신주현 (☎ 063-430-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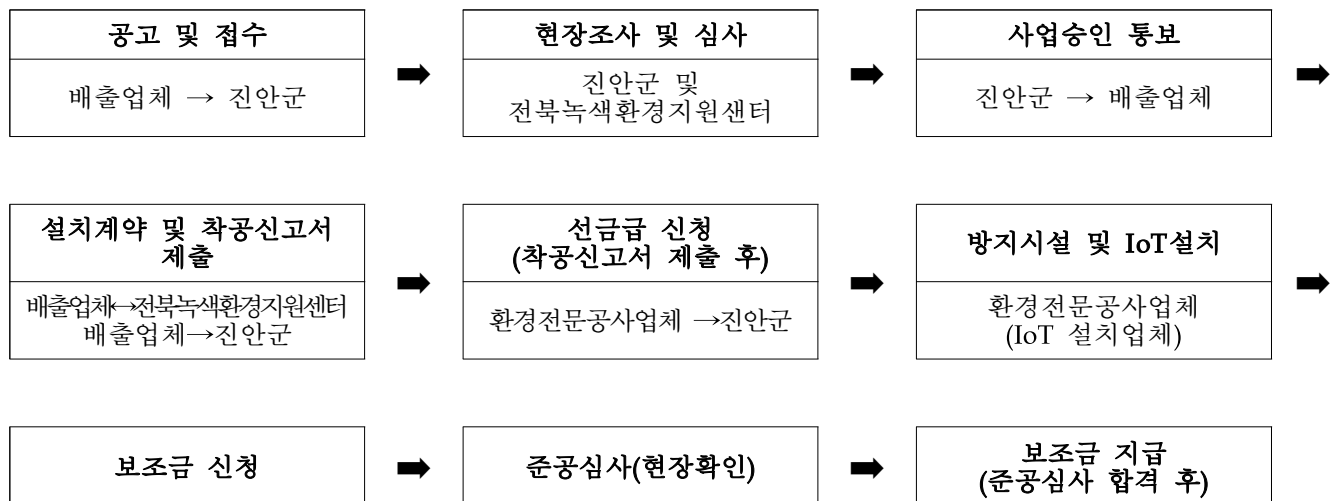
10. 신청서 서류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및 PDF 파일 제출
 - ※ PDF파일 제출 : tswngosu@korea.kr
-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사업진행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구비서류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 계약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붙임 5-1 또는 5-2)를 제출하여야 함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 방지시설 교체 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6-1 또는 6-2)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 9-1 또는 9-2),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12.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4. 1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대상선정 : 2024. 12월중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보조금 지급(진안군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 ※ 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13. 보조금 환수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원 받은 방지시설, IOT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지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063-430-252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방지지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 3-3.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4.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 5-1.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 5-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 6-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 6-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7.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8.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1부.
 - 9-1. 위임장 1부.
 - 9-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위임장 1부.
 - 10-1.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끝.
 - 10-2. 보조금 반납 협약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끝.

[붙임 1]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 (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나.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 2021년 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 ³ /분	3,307	2,977	1,654	1,323	
	200m ³ /분	4,791	4,312	2,396	1,916	
	300m ³ /분	6,028	5,425	3,014	2,411	
	400m ³ /분	7,593	6,834	3,797	3,037	
	500m ³ /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m ³ /분	1,300	1,170	650	520	
	200m ³ /분	2,400	2,160	1,200	960	
	300m ³ /분	2,800	2,520	1,400	1,120	
	400m ³ /분	3,900	3,510	1,950	1,560	
	500m ³ /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m ³ /분	3,508	3,157	1,754	1,403
		200m ³ /분	4,568	4,111	2,284	1,827
		300m ³ /분	5,629	5,066	2,815	2,251
		400m ³ /분	7,391	6,652	3,696	2,956
		500m ³ /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m ³ /분	3,659	3,294	1,830	1,464
		200m ³ /분	4,846	4,361	2,423	1,938
		300m ³ /분	5,929	5,337	2,965	2,372
		400m ³ /분	7,640	6,876	3,820	3,056
		500m ³ /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 의한 시설	100m ³ /분	1,706	1,535	853	682	
	200m ³ /분	3,034	2,731	1,517	1,214	
	300m ³ /분	3,544	3,190	1,772	1,418	
	400m ³ /분	4,667	4,201	2,334	1,867	
	500m ³ /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m ³ /분	13,400	12,060	6,700	5,360	
	200m ³ /분	18,760	16,884	9,380	7,504	
	300m ³ /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m ³ /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m ³ /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m ³ /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m ³ /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m ³ /분	43,900	39,510	21,950	17,56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400m ³ /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m ³ /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m ³ /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m ³ /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m ³ /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m ³ /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m ³ /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 ³ /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m ³ /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m ³ /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m ³ /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m ³ /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m ³ /분	2,697	2,427	1,349	1,079
	200m ³ /분	3,928	3,535	1,964	1,571
	300m ³ /분	4,787	4,308	2,394	1,915
	400m ³ /분	6,239	5,615	3,120	2,496
	500m ³ /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사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 주5) 방지사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주6) RTO 등의 방지사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사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사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2022년 이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사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 ³ /분	3,300	2,970	1,650	1,320	
	200m ³ /분	4,700	4,230	2,350	1,880	
	300m ³ /분	6,300	5,670	3,150	2,520	
	400m ³ /분	7,500	6,750	3,750	3,000	
	500m ³ /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m ³ /분	1,200	1,080	600	480	
	200m ³ /분	2,300	2,070	1,150	920	
	300m ³ /분	3,000	2,700	1,500	1,200	
	400m ³ /분	3,800	3,420	1,900	1,520	
	500m ³ /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 지 용	100m ³ /분	3,500	3,150	1,750	1,400
		200m ³ /분	4,600	4,140	2,300	1,840
		300m ³ /분	6,100	5,490	3,050	2,440
		400m ³ /분	7,400	6,660	3,700	2,960
		500m ³ /분	8,400	7,560	4,200	3,360
	가 스 용	100m ³ /분	3,800	3,420	1,900	1,520
		200m ³ /분	5,000	4,500	2,500	2,000
		300m ³ /분	6,700	6,030	3,350	2,680
		400m ³ /분	7,900	7,110	3,950	3,160
		500m ³ /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m ³ /분	1,600	1,440	800	640	
	200m ³ /분	2,900	2,610	1,450	1,16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300m³/분	3,500	3,150	1,750	1,400
	400m³/분	4,400	3,960	2,200	1,760
	500m³/분	5,000	4,500	2,500	2,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m³/분	14,500	13,050	7,250	5,800
	200m³/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m³/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m³/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m³/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 장치)	100m³/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m³/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m³/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m³/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m³/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 촉매 환원법)	100m³/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m³/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m³/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m³/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m³/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859천원	2,572천원	1,429천원	1,143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5,058천원	4,552천원	2,529천원	2,023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488천원	5,839천원	3,244천원	2,595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77천원	6,728천원	3,738천원	2,990천원
	1톤이상 2톤미만	7,535천원	6,781천원	3,767천원	3,014천원
	2톤이상 3톤미만	9,582천원	8,623천원	4,791천원	3,832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1,789천원	10,609천원	5,894천원	4,715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4,416천원	12,974천원	7,208천원	5,766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5,253천원	13,727천원	7,626천원	6,101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6,818천원	15,136천원	8,409천원	6,727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8,077천원	16,268천원	9,038천원	7,230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20,032천원	18,028천원	10,016천원	8,012천원
10톤이상	21,658천원	19,492천원	10,829천원	8,663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³/분	19,100	17,190	9,550	7,640
	200m³/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m³/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m³/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m³/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m³/분	6,000	5,400	3,000	2,400
	200m³/분	8,900	8,010	4,450	3,560
	300m³/분	11,500	10,350	5,750	4,600
	400m³/분	14,100	12,690	7,050	5,640
	500m³/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m³/분	2,697	2,427	1,349	1,079
	200m³/분	3,928	3,535	1,964	1,571
	300m³/분	4,787	4,308	2,394	1,915
	400m³/분	6,239	5,615	3,120	2,496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500m ³ /분	7,568	6,811	3,784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주7)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방지사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사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 여과집진기 300m³/분 초과, 400m³/분 미만 방지사설 설치비는 300m³/분(6,028만원)과 400m³/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 여과집진기 500m³/분 초과 방지사설 설치비는 500m³/분 방지사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붙임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사설 및 ③방지사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사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사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사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사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사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2.11.)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사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모델명 기준)의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KS 인증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사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³⁾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사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사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양

1)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2)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무게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3)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및 타입	-40℃ ~ 100℃(필요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4) pH계

구 분	사 양	비 고
측정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오차	±5% 이내	
출력신호	4 ~ 20mA	
온도보상	0 ~ 5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div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div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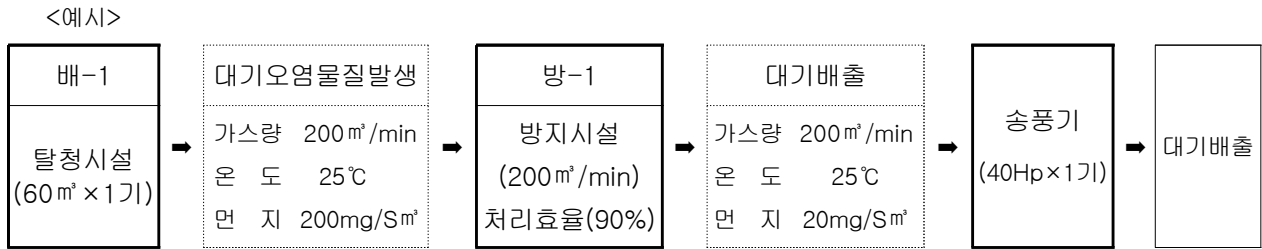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 2) 유지관리비용 산정
 -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 나) 전력비
 -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지설일 경우 방지지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지설①	방지지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지설①=방지지설A+사물인터넷A'

방지지설②=방지지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지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지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지설 (A-①)

공사종별		금액(원)	세부산출내역
합계			
공사비	소계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사종별	공사구분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압계 (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 (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 (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배출류시계설	300,000			
	전방지류시계설	300,000			
	IoT계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밀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사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사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사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사설 지원(신청)실적

-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사설 내역
-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이행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지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지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측정기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덕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 3) 배출시설 전류계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시설·세정집진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포함
- 4) 방지시설 전류계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 .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 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5-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소재지		전화 팩스	
부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OO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

[붙임 6-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대기배출시설명	규격	수량	측정기기 종류	수량	
신청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p>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감도장)</p> <p>○○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산출내역.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장 위치도 1부.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통장 사본(설치업체)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별첨**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자동약식(Greenlink)]**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³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적합/부적합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 12. 01.		2023. 12. 02.		2023. 12. 03.		2023. 12. 04.		2023. 12. 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적합/부적합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28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적합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적합/부적합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M	저장자료 요청	2023.12.01.	적합/부적합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3	PCNG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적합/부적합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적합/부적합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적합/부적합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10	PFG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적합/부적합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적합/부적합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적합/부적합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적합/부적합	
방지1	차압계	1							적합/부적합	
방지2	pH계	1							적합/부적합	
송풍2	전류계	1							적합/부적합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적합/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적합/부적합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수동약식]

실시간 자료 (수신자료, 배출구별 수신자료)

“수신자료 조회” 화면
수신자료 조회
“배출구별 수신자료 조회” 화면
배출구별 수신자료 조회

실시간 자료 - 원격명령 - (신규)원격명령 관리

“저장자료 요청” 화면
저장자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화면
암호 변경 지시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화면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수동시간 설정” 화면
수동시간 설정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화면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화면
설정정보 조회 요청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화면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화면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화면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화면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붙임 9-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위 임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입자에게 상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10-1]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사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사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사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10-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